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8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운영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8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운영회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정의 내용 수정(안 제2조)
 -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- 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동물보호법」 개정 시행(2023.9.15.) 및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」 개정(2023.10.04.)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적용 법률을 재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 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